

과업지시서

1. **공사명:** [대학혁신지원사업] 스미스관 교육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
2. **공사위치:** 스미스관
3. **공사기간:** 착공일로부터 2027. 2. 15. 까지
4. **입찰 참가 자격:**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중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
5. **주요공사 개요**

구 분	공 사 내 용	비 고
냉난방	- GHP냉난방기 철거 후 교체 - GHP냉난방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- GHP냉난방 자동제어장비 교체 및 이설 - 옥상 가스배관 일부 철거 후 재설치 등	
위생	- 옥상 물탱크 철거후 교체 - 기존 배수배관 철거 후 교체 - 세면기 설치 등	

6. 공사범위

- 가. 본 공사는 **입찰공고사항, 설계도면(시방서 포함), 내역서, 과업지시서** 등을 기준으로 시공하며, 어느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공사범위에 포함한다.
- 나. 본 공사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시공 일괄 **총액입찰**이며, 계약 내역서의 물량과 설계도면 상의 물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.
- 다.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으며, 입찰참가자는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분을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.
- 라. 공사의 진행 또는 준공과정에서 관계법령, 안전, 성능 등의 검사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, 해당 비용은 본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
- 마. 본 공사의 계약(도급)내역서는 **설계내역에 대한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내역**으로 한다.
- 바. 공사 전(후) 현장 정리(청소), 자재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것 모두 포함한다.
- 사. 모든 시공 자재는 도면, 시방서, 내역서 등에 명기된 동등 이상으로 하며,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자재는 KS 인증 국산 최고급으로 한다. 또한, 시공 전 감독관에게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받고,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.
- 아.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업체는 필히 현장답사 후 공사범위 등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다.
- 자.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교외로 처리한다.
- 차. 설계도서상 서로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,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다.
- 카. 공사기간 중 학교행사, 학사일정 등에 따라 작업시간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일부 조정할 수도 있으며, 이에 따른 공기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타.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괄 2년으로 한다.

7. 특기사항

- 가. GHP냉난방기는 기존 자동제어 및 학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최신 제조일자의 **얀마사 제품 동등 이상**으로 한다.

- 나. 냉매배관은 재사용하며 위치이동에 따른 배관연장은 포함한다.
- 다. 냉매배관 용접작업 필요시 질소홀림용접으로 하며(산화방지 철저) 소화기, 방화포 등을 항상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한다.
- 라. GHP냉난방 자동제어장비는 교체 및 이설을 포함한다.
- 마. 벽체 타공 필요시 배관 주변은 방화실란트 또는 그에 준하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마감한다.
- 바. 옥상 실외기 도시가스 연결 후렉시블 배관 및 볼밸브는 교체한다.
- 사. 본공사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하거나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, 기계설비 및 안전 관리(화재 포함) 관련 법령을 포함한 현행 및 개정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아. 공사 완료 후 시운전, 관련 법정 인허가(냉동검사) 등 있을 시 필히 수행하며 통과해야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8. 기타

- 가. 공사 전 우리 대학교에서 규정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(예. 착공계, 현장대리인계, 공정표, 계약내역서, 자재승인서, 사진대지 등)
- 나. 공사의 모든 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.
- 다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및 모든 경비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.
- 라. 공사 시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사고 시 도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.
- 마.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.
- 바. 공사 수행 중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구역을 정리·통제하며,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자재 및 폐기물을 정리하여 현장을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9. 설계변경

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증감된 물량의 기존비목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며,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한 가격정보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이 단가에 설계가 대비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.

10. 문의사항 연락처: 계명대학교 시설안전팀(053-580-6148, E-mail: jykim@kmu.ac.kr)

2026. 10. 26.

계명대학교 시설안전팀장 